

고 시

우리시 화도읍 창현리 391-20번지 일원 창현2도시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제4항·제6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- 가. 사 업 명 : 창현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
- 나. 사업위치 :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91-20번지 일원
- 다. 사업주체 : 창현지역주택조합, (주)한양건설
- 라. 사업내역

구 분		사 업 내 용		
대지면적		60,000.00㎡		
건축면적		9,650.31㎡	건 폐 율	16.08%
연 면 적		200,903.33㎡		
용적률산정연면적		132,318.61㎡	용 적 률	220.53%
공동주택	동수 및 층수	공동주택 1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 지하5층 ~ 지상29층		
	세 대 수 (주택유형)	1,340세대	59. ⁹⁹⁰⁰ ㎡	195세대
			59. ⁹⁹⁰⁰ ㎡	100세대
			59. ⁹⁹⁰⁰ ㎡	207세대
			74. ⁹⁹⁰⁰ ㎡	447세대
			84. ⁹⁶⁰⁰ ㎡	168세대
			84. ⁹⁹⁰⁰ ㎡	54세대
			84. ⁹⁸⁰⁰ ㎡	159세대
			116. ¹³⁰⁰ ㎡	10세대
사업기간	2026.01.30. ~ 2030.03.29.			

- 마. 변경사항 : 사업주체 변경, 사업기간 변경, 총 사업비 변경, 구조심의 결과 반영에 의한 건축면적, 연면적, 건폐율, 용적률 변경 및 토목도서 변경 등
- 바.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(일괄)처리사항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개발행위허가,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산지전용허가
- 사. 관련 도서 및 도면 : 게재 생략
- 아. 공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20일간

2025. 12. 15.

남 양 주 시 장